#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196 발의연월일: 2021. 6. 29.

발 의 자:이해식 · 노웅래 · 서영석

안규백 · 위성곤 · 이명수

인재근 · 임호선 · 정일영

진성준 • 한병도 의원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되는 민원의 증가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이러한 악의적인 민원으로 인해 다른 민원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 악순환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이에 행정기관의 장은 이러한 반복 민원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대책을 심의하도록 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민원 처리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제40조제2항).

#### 법률 제 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반복 민원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행정기관의 장은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제2항 중 "심의요청 사항"을 "심의요청 사항, 제34조의2에 따른 반복 민원에 관한 대책"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lt;신 설&gt;</u>	제34조의2(반복 민원 등으로 인
	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행
	정기관의 장은 그 목적이 정당
	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
	<u>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u>
	정신적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
	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①	제40조(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조정회의는 여러 부처와 관	2
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 제39	
조제6항에 따른 <u>심의요청 사항</u>	<u>심의요청 사항,</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의2에 따른 반복 민원에
을 심의·조정한다.	<u>관한 대책</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